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8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
정재용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용대상자의 제한사항을 변경함(안 제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2. 체험시설의 보호 및 체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3.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이용대상자) ①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<u>자</u>는 서울특별시민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</p> <p>1. <u>위험물질,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</u></p> <p>2. 체험시설의 보호 및 체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<u>자</u></p> <p>3. <u>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이용대상자) ① ----- ----- <u>사람은</u> ----- ----- ----- -- <u>사람</u>----- -----.</p> <p>1. <u>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3. <u>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